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153호

**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)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4-32호(2014. 4. 7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-7외1필지의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처리하고, 동법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 02-2147-2888)와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 02-6417-3886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11월 9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-7외 1필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24,036.4㎡
4. 사업시행자 :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상호)
5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-7 관리사무소 내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7. 사업시행인가일 : 2014. 4. 7.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도 비치
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 분	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용도	층 수
대상지	24,036.2	22.02	299.71	102.9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/ 지상35층

10. 변경사항

구 분	주 요 변 경 내 용
구조기능개선	· 지하주차장 기초변경(독립기초방식에서 MAT기초방식) · 지하3층 내수압슬라브 두께 강화(300mm에서 350mm) ·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트렌치 추가설치(1면에서 4면) 및 벽체 크랙 및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배수판넬 적용 · 지하주차장 램프 골조 변경(보&거더 형식에서 슬래브구조) · 세대간벽 변경(방화석고보드+ 그라스울구조 에서 R.C구조) · 작은도서관, 경로당, 주민운동시설 층고상향 등

구 분	주 요 변 경 내 용
마감재	· 창호사이즈변경(침실,부대시설 창호 유리사양 등) · 주민운동시설 계획 변경(샤워실및화장실 위치변경)등
사용성 및 기능개선	· 개방형 발코니 선홈통 변경(선홈통 삭제) · 장애인램프 디자인 변경(R.C터에서 난간타입) · ELEV홀 최하층 바닥 45T 배수관 추가설치 등

- 1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**